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3-----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3. 13

다. 상정일자 : 제 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2003. 3. 20)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 가. 제안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 공포로 현행 공중위생영업이 개설 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사무 분장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 7조②항에 15.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제 10조 6. 공중위생영업소 및 식품위생영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 3.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2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영업의 개설 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으로 개정법에 따라 위의 업무를 도시국에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소 업무를 관리만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5. 결의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